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의결사항

노 인 복 지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거나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4. 8. ~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를 “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1조의2제3항제3호”를 “법 제61조의2제4항제3호”로 한다.

마. 법 제39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1조의2제3항제1호	150	300	300
아. 법 제3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	150	300	300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458